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23 선고 2020가단41383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민경택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호경, 민지홍

피 고 1. 주식회사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이정신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2. 2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949,808원 및 그 중 375,100,000원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2021. 6. 15.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당시 상호는 E 주식회사였다. 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8. 3. 20. 인천 연수구 F공사 현장의 1,530세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피고 회사가 주방가구를 공급하고 참가인 회사는 그 대가로 3,751,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방법으로 참가인 회사에게 지급하고, 만일 피고 회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참가인 회사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참가인 회사, 보험가입금액을 375,100,000원, 보험기간을 2018. 3. 20.부터 2020. 6. 30.까지로 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에게 부담하는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의 보증을 위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주방가구를 공급하였는데, 2019. 11.

1.부터 2019. 11. 7.까지 실시된 ‘주부모니터 점검’ 실시 결과 피고 회사가 공급한 주방가구에 대하여 총 3,726건의 미시공, 시공불량, 개폐불량, 훼손과 같은 하자가 발견되었다.

바. 참가인 회사는 2019. 11. 22., 2019. 12. 6., 2019. 12. 20. 3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에게 하자제품의 교체·수리작업을 해 주도록 요청하였지만 피고 회사는 이를 일부 이행했을 뿐 하자보수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고, 2019. 12.경부터는 피고 회사의 현장인력이 철수해버려 2019. 12. 19.부터 시작된 ‘입주자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하자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보수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사. 참가인 회사는 244,990,900원을 들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로 하여금 피고 회사가 수행하지 않은 하자보수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2020. 5. 22. 피고 회사의 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아. 참가인 회사는 2020. 6.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4회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등 그 경위에 관해 조사한 뒤 보험사고의 발생을 인정하여 2020. 7. 28.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참가인 회사에게 보험금 375,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참가인 회사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20. 5. 2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75,100,000원에 지급일 다음날인 2020. 7. 29.부터 2020. 8. 27.까지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849,808원을 더한 376,949,808원(= 375,100,000원 + 1,849,808원) 및 그 중 보험금 375,100,000원에 대하여 위 계산 다음날인 2020.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6. 15.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방가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완료하였고 하자가 발생한 것은 참가인 회사가 마루바닥 공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주방가구 설치를 지시하였기 때문이고, 요청받은 하자보수의무도 대부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의무를 위반하여 참가인 회사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였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피고들이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백규